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 입주자 모집공고

HONORSVILL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1. 건물주택 운영관련 안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물주택 방문가능 기간 및 인원, 당차주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차주 발표일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차주(에비입주자 포함)의 건물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건물주택 입장 제한시에는 홈페이지(http://www.군산경남아너스빌디오션)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택 방문시 내부가 혼잡할 경우, 입장이 제한되어 외부에서 대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택 방문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건물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 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관망이 제한됨)
-건물주택 입장 전 손소독제 비점촉제외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건물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점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 의심자는 건물주택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 고개선(1533-087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개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시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11.입니다. (청약자격조건외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조건외 판디기준일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주택행정과 - 26241호(2022.08.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39-70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최대 29층 11개동 총 873세대 및 부대리사실(특별공급 452세대 - 일반(기권추천) 특별공급 8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7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8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기권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기타
인명 주택	2022-000536	01	084.9393A	84A	84.9393	28.3519	113.2912	4.0691	55.7748	173.1351	45.9681	625	62	62	125	18	62	329	296	26
		02	084.9508B	84B	84.9508	28.5421	113.4929	4.0696	55.7824	173.3449	45.9744	70	7	7	14	2	7	37	33	3
		03	084.9547C	84C	84.9547	27.9069	112.8616	4.0698	55.7850	172.7164	45.9765	41	4	4	8	1	4	21	20	2
		04	084.9758D	84D	84.9758	30.1568	115.1326	4.0708	55.7988	175.0022	45.9879	56	5	5	11	1	5	27	29	2
		05	084.9182E	84E	84.9182	28.3409	113.2591	4.0681	55.7610	173.0882	45.9567	78	7	7	15	2	7	38	40	3
		06	105.7503	105	105.7503	39.3813	145.1316	5.0661	69.4403	219.6380	57.2308	3	0	0	0	0	0	3	0	0
		합계											873	85	85	173	24	85	452	42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대지비율 면적 환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환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확장 결과 및 공부정의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하중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비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확장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기준 용도지역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면적입니다.

※ 지하주차장 면적에는 헬륨, 제연헬륨의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타입별 세부구조와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 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을과 모델링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하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인수로 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건물주택 방문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급소식의 표기이며, 건물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재질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3.05.20.	2023.11.20.	2024.05.20.	2024.11.20.	2025.05.20.	2025.11.20.

구분	특별공급 (기권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정	2022.08.22(월)						2022.08.23(화)
방법/시간	인터넷 청약(09:00~17:3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주체 건물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프ئم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분주택(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1번지) * 신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플러스’ 검색
-스마트프ئم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용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가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7 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물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부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건물주택 방문 접수시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형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청약회약계속(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건물주택 방문 접수시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부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로 인해 은행 영업일정 업무시간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회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기점행록 등 청약신청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청약/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성악과일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6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급내주택을 포함)의 당첨(단일)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권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항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외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권추천 특별공급(국가계약직,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납입안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월납입안정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이다.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tbody><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기타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공급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녀)양육, 형제(매우 부양) 중 입주자지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간선지역(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민등록표본상 할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한다.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무효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장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와 관계없이 당첨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단일)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급인(다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명하여야 청약 가능함이다(단, 차액에 관해서는 정문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이다) ※ 청약관련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함이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이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이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함이다. ⑤ 단은 주택규모별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편성 청약 가능함이다)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시판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관련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가능함이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이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이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함이다. ⑤ 단은 주택규모별 변경 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편성 청약 가능함이다)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시판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 지속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인명 주택	1순위	전용 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정제 (40%) 및 추정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정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함이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안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안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안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면적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 신청시 추정제로 접수되며, 추정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함이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안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안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모함)에 가입한 자.

해당지역	기타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인명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인명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이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자격,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이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함이다.

4 납부방법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425469	신한자산신탁(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425497	신한자산신탁(주)
추가선택상품 납부계좌(발코니 확장비용외)	광주은행	1107-021-422046	경남기업(주)

※ 상기 계좌와 납부처 이 아닌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상품(현행형 시스템에어컨, 가전제품, 현관중문, 가구 및 기타)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물주택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분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호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5 사업주체, 시공사 및 관리자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상 호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동아전기감리(주)	(주)인신
공 액	2,923,774,700원	947,540,000원	539,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변조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2345,378,000,000-	제 01222022-101-0002400호

※ 분양보증은 받은 아파트 사업자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L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및 시공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110111-0008262	충남 아산시 청문로176